

# 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10월 20일

## 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 한국형 TDF 2015 종권투자신탁H[채권혼합-재간접형]

##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6년 9월 13일

## 3. 정정 사유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표준편차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
## 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## 5. 정정사항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정전  | 정정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요약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투자비용<br>투자실적추이<br>운용전문인력     |  | 업데이트  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  |  |  |
| 5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   | -  | 업데이트  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           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<br>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<b>8.01%</b> 입니다. 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<br>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<b>6.79%</b> 입니다.    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       |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-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(단위: 원)<br>-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br>- <b>업데이트</b><br>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(단위: 원)<br>- <b>업데이트</b> |
| 제3부.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   |  |  |
| 1. 재무정보<br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-  | 업데이트   |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| 정 정 전           | 정 정 후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3. 집합투자기구<br>의 운용실적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. 집합투자업자<br>에 관한 사항     | 라. 운용자산 규모<br>- | 라. 운용자산 규모<br>업데이트 |

# 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10월 20일

## 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퇴직연금Active채권종합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[채권]

##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1. 08. 08

## 3. 정정 사유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개신(표준편차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
## 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## 5. 정정사항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| 정 정 전  | 정 정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요약정보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투자실적 추이<br>투자비용<br>운용전문인력 | -  | 업데이트  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|  |  |
| 5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| -  | 업데이트  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        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<br>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<b>3.45%</b> 입니다.         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br>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<br>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<b>3.43%</b> 입니다.            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    | -  | 업데이트  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  | 나. 과세<br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<br>1)~2) (생략)<br>3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br>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 | 나. 과세<br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<br>1)~2) (현행과 같음)<br>3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br>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 |

|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정 전  | 정 정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<b>400만원</b>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<b>700만원</b> 한도까지 12%(또는 15%) 세액 공제<br/>(<b>추 가</b>)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__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br/>(<b>추 가</b>)</p> | <p>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<b>600만원</b>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<b>900만원</b>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<b>지방소득세 포함</b>) 세액공제 단,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__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(<a href="https://100lifeplan.fss.or.kr">https://100lifeplan.fss.or.kr</a>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 |   |
| 1. 재무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-<br/>(<b>신 설</b>)</p>   | 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업데이트</p> <p>[기업공시서식개정 내용 반영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의 매매회전율</li> <li>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</li> <li>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</li> </ul> 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             | -  | 업데이트 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               |  |  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      |  | 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|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-<br/>라. 운용자산 규모<br/>-</p>   |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업데이트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업데이트</p>  |